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
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등 5명
- 발의일자: 2025. 5. 27.(화)
- 회부일자: 2025. 5. 27.(화)
- 검토기간: 2025. 6. 5.(목) ~ 6. 12.(목)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마.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 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안 제7조)
- 사.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아.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10조 안 제11조)

- 자. 통합지원협의체 및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차. 교육 및 홍보(안 제14조)
- 카.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5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대상자 발굴·지원체계 구축, 자원 및 집행, 균형있는 통합지원 공급 방안,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조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지원 추진 사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의 구성과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창구 설치 및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무 일부 전문기관 위탁, 주민 교육·홍보, 통합지원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

- 위와 같이 살펴본 바,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2024. 3. 26. 제정 2026. 3. 27. 시행)에 따라 국민의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 조례 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출 후 2025년 6월 11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 등 조례안 중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